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14 ~ 64
----------	-----------

제출연월일	2014. 8. 20.
제 출 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도시공원법」 제30조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면서 삭제되었는바, 위 규정을 근거로 만들어진 조례를 폐지하고, 같은 법 제41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의 전국적 통일적 집행의 필요성을 중시하는 현행법을 준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2조·별표)

나. 점용료 징수 및 반환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제4조)

○ 점용료는 연액으로 일괄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징수 가능

○ 점용료 환불기준 :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취소한 경우,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신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다. 「거창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폐지(안 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규제개혁추진단)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2) 규제심사 : 폐지함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4. 7. 16. ~ 8. 0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5) 성별영향분석 : 해당없음

거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점용료의 납부) 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 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분을 되돌려 줄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허가 철회나 점용기간 단축을 군수에게 신청한 경우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	점용료율
1. 전주, 전선, 변전소, 지중변압기, 개폐기, 가로 등분전반, 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하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한다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3.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위험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5. 경찰관파출소·초소 등의 표지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6. 방화용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7.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면 제
8. 농업·임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 제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등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의 설치	면 제
10. 공원 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면 제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면 제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면 제
13.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4.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 또는 대수선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죽목의 벌채 및 재식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토석 채취 및 죽목의 벌채는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취운반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육림을 위한 벌채, 수종갱신을 위한 벌채 및 조림(재식)은 이를 면제한다.
17.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개별공시지가 또는 인근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 가액의 100분의 5로 한다.

※점용면적 산출기준

1. 점용면적 산출은 지하, 지상물을 불구하고 평면적(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지하에 매설된 관로는 매설관의 직경(외경)으로 한다.
3. 같은 장소에 다수의 관로 매설 시는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직경으로 한다.
4. 지하에 매설된 전기, 통신시설등과 관련한 맨홀의 경우는 맨홀에 설치된 시설물은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맨홀의 평면적으로 한다.